

청주지방법원 2020. 9. 25 선고 2020가단28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B

피고1. C

2. D

3.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김한근, 신인경

변론 종결2020. 9. 18.

판결 선고2020. 9. 25.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F 대 59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그 부분 10㎡ 지상 건물,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 시멘트 조립식 담장을 철거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대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8. 20. 접수 제808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 토지 지상에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지상에, 위 주택에 부속한 담장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에 각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1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의 지적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권원 없이 각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0㎡ 지상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5, 6, 7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 담장을 각 철거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 D, E에 대하여도 건물과 담장 철거 및 각 점유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나,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위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측량감정결과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 당시의 측량방법과 기준점에 의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경계 침범 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므로,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5. 4. 21. 선고 94다58490, 58506 판결, 1994. 5. 13. 선고 93다56381 판결 등 참조), 토지의 등록 당시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판측량 방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이루어진 경우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현재에 이르러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찾을 수 없어 등록 당시의 기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분할측량원도를 토대로 등록 당시와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는바, 대상 토지의 사정변경으로 위 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는 것마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기초측량에 의하여 해당 토지 인근의 도근점을 찾아내어 이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42451 판결, 1991. 7. 23. 선고 90다1526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에 대한 지적도 등록 당시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와 G 토지 인근의 측량기준점을 토대로 이 사건 측량감정이 이루어진 사실, 지적도 등록 당시에는 측판측량방식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측량감정에서 사용된 전자평판측량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측량방법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측량감정은 지적도 등록 당시의 측량 대상 토지의 측량 기준점의 위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측량 대상 토지로부터 가장 인접한 측량기준점에 의거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한 것이어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측량감정결과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수영

별지